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도	2026.10.15.(목) 조간	배포	2026.10.14.(수)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정훈 (02-3145-8070)
	중소금융검사2국	담당자	부국장 이동원 (02-3145-8072)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박진호 (02-3145-7410)
	중소금융검사1국	담당자	팀 장 박종호 (02-3145-7380)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익남 (02-3145-8810)
	중소금융검사3국	담당자	팀 장 이진우 (02-3145-8805)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최병주 (02-397-8602)
	경영전략본부	담당자	부 장 조부제 (02-397-8710)
	신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강연수 (042-720-1431)
	검사본부	담당자	팀 장 김정은 (042-720-1451)
	농협중앙회	책임자	처 장 김성용 (02-2080-5300)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담당자	팀 장 황인경 (02-2080-5308)
	수협중앙회	책임자	실 장 임구수 (02-2240-3420)
	조합감사실	담당자	팀 장 양건우 (02-2240-3414)

금감원, 중소기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6대 핵심원칙(S.A.F.E.T.Y.)의 중소기업권 표준 준법제보 체계 마련
- 포상금 최대 10억원 등 제보 인센티브 확대 및 제보자 보호 강화

- 중소기업권은 소규모 조직 특성에 따른 직무분리 한계 등 내부 통제상 취약점이 있어 사고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각 업권 중앙회·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일된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고 7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제보 인센티브 강화와 철저한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은 10월, 여전업권은 11월 본격 시행*하며, 금감원은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저축은행) 10.1. 시행 (상호금융) 10.19. 시행 (여신전문) 11.1. 시행.
- 향후 同 제도가 각종 비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견고한 감시망으로 자리 매김하여 업권의 자정기능을 제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번에 마련된 중소기업권 표준 준법제보 체계는 **6대 핵심원칙** (S.A.F.E.T.Y.)으로 구성되었습니다.

① [Standardized]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 중소기업권 공통의 표준 준법제보 운영기준 마련
-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체계 구축(중앙회 중심^{상호업권} vs 중앙회(협회)·금융회사 분업^{저축·여전업권})

② [Anyone] 누구든지 제보하고 제보 대상도 확대

- 제보 주체를 '현직 임직원'→'누구든지(퇴직자·외부자 포함)'로 확대
- 기발생 사고 외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전 제보'도 제보 대상에 포함

③ [Fully protected]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 익명 제보채널 전면 도입 및 변호사 대리제보 허용
 - 7대 불이익조치(부당한 징계·인사발령·감사실시 등) 금지 명문화
 - 불이익조치 발생시 보복행위 간주요건^{*}을 신설하여 조치자(회사)에게 입증책임 전환
- * 제보 이후 2년 내 불이익조치, 제보자 색출 또는 제보를 방해한 경우 등

④ [Enlarged reward]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소규모 회사 5억원)으로 대폭 상향
- 포상금 지급대상을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및 금융관련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등까지 확대
- 제보자의 실질적 피해(치료비·소송비 등)를 보전하는 구조금 제도 신설

⑤ [Total responsibility]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 위법행위 내부자가 지체없이 자진 신고 시 징계 적극 감면
 - 타인의 위법·부당행위 인지 후 제보하지 않을 경우 징계 근거 명확화
-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저축·여전)에 한하여 우선 적용

⑥ [Yearly improvement]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

- 정기적인 제도 운영 점검 및 이사회 등 보고
- 정기 교육·홍보를 통한 준법제보 조직문화 정착

☞ 상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업권별 중앙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준법제보 제도 내용 및 제보채널, 제보방법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P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I. 추진 배경

□ 최근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위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내부 통제 수단으로서 준법제보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실제 글로벌 기관(美 ACFE*)의 연구에서도 활성화된 준법제보 체계가 사고적발 및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美 공인부정조사사 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 '88년 설립된 세계 최대규모의 기업 부정행위 방지·적발 전문 협회

[참고] 준법제보의 사고 적발 · 예방 효과(美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 '24.1월~'25.9월중 143개국의 총 2,402건의 부정행위 적발 사례를 분석

- ① (부정행위 적발의 핵심) 적발된 부정행위의 43%가 내부제보를 통해 드러나는 등 핵심적 역할 수행 (이외 내부감사(15%), 경영진 검토(13%) 등 順)
- ② (제보채널 운영의 효과성) 공식 제보채널 운영 기업은 미운영 기업 대비 사고 피해액 33% 감소(15만\$→10만\$), 적발기간 6개월 단축(17개월→11개월)
- ③ (준법제보 교육의 중요성) 교육 이수직원은 유효한 제보를 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으며, 직원·관리자가 모두 교육 이수 시 사고 피해액 44% 감소(15만\$→8.4만\$)

□ 중소기업업권*은 소규모 조직 특성에 따른 직무분리 한계 등 내부 통제상 취약점이 있어 사고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 여신전문(카드·캐피탈 등)

□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각 업권 중앙회·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일된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25.7월 은행권 도입 사례 등을 적극 참고하되 중소기업업권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 국민 건강·안전·소비자이익 등 공익침해 행위 제보, 제보자 보호, 포상금 등을 규정('11.3월 제정)

○ 이를 바탕으로 제보 유인구조 및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준법제보 체계(S.A.F.E.T.Y.)를 마련하였습니다.

II. 준법제보 제도 주요내용

◆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기존 내부고발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6대 핵심원칙(S.A.F.E.T.Y.)**의 중소기업업권 준법제보 체계 마련

1 [Standardized]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 중소기업업권 **공통의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각 업권 **중앙회·협회**가 구심점이 되는 **맞춤형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제도명칭 변경)** 부정적 어감을 주던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변경

□ **(표준 운영기준)** 각 업권이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소기업업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준법제보 운영기준*」 마련

* 예: 제보 처리절차,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

□ **(맞춤형 운영체계)** 각 업권의 업무처리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하고, 저축·여전업권은 중앙회(협회)·금융회사가 분업하는 맞춤형 운영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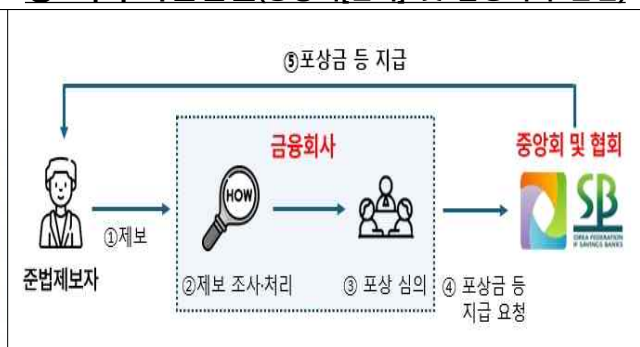
* 1) 상호금융업권 : 조합 감독·검사권을 보유한 중앙회가 직접 제보를 처리·조사할 수 있어 중앙회 중심의 제도운영 가능

2) 저축·여전업권 : 은행권 도입 사례와 동일하게 중앙회(협회) 및 금융회사 분업 구조로 운영

① 상호금융업권(중앙회 중심)



② 저축·여전업권(중앙회[협회] 및 금융회사 분업)



2 [Anyone] 누구든지 제보하고 제보대상도 확대

√ 제보 주체를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제보하도록 하는 ‘사전·사후 제보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제보주체 확대)** 현직 임직원으로 제한되었던 제보주체를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 등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도록 확대
- **(제보대상 확대)**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 중심의 '사후제보 시스템'에서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까지 제보하도록 하는 '사전·사후제보 시스템'으로 개편
 -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의 제보 대상을 '쫄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
 - ※ 금융관련법규와 직접 관련 없는 분야(예: 성비위, 상호금융업권 경제부문 비위 등)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각 중앙화·협회 및 금융회사 자율 운영)

3 **[Fully protected]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 √ **익명채널 도입,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등 제보자 신분노출 우려를 차단하고, 7대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제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 **(익명성 강화)** 실명 위주 제보채널 운영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 허용(「공익신고법」 준용)
 - ※ 단, 포상금 등 수령을 위해서는 실질 제보자의 인적정보 등 제공이 필요
- **(비밀유지 강화)** 비밀유지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보업무 처리 관여자 전원(접수·처리·심의 등)에게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의무화
 - 아울러, 포상금 등 지급 심의 시에도 제보자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익명화)하여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
- **(7대 불이익조치 금지)** 제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리한 대우 등 추상적이었던 불이익조치를 7대 유형으로 구체화(「공익신고법」 준용)

①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 ②징계,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③전보·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⑤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조치, ⑥따돌림·폭언 등 행위, ⑦부당한 감사
- **(입증책임 전환)**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복 행위로 간주되는 요건*을 명시하고 이 경우 조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공익신고법」 준용)
 - * ① 준법제보가 있는 후 2년 이내에 7대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②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 제보를 방해하는 경우
 - ※ 조치자(금융회사)는 해당 불이익 조치가 제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정당한 조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

4

[Enlarged reward]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구조금을 신설하는 등 제보 유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포상금 한도 상향)** 기존 수백~수천만원 수준이었던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 규모*로 대폭 상향

- * · [저축은행] (최대 10억원) 총자산 1조원 이상, (최대 5억원) 총자산 1조원 미만
- [상호금융] (최대 10억원) 농협 · 신협 , (최대 5억원) 수협 · 산림
- [여신전문] (최대 10억원) 총자산 2조원 이상, (최대 5억원) 총자산 2조원 미만

- 또한, 최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산정된 포상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同 금액 수준(예: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되었던 지급대상을 확대

- 기존 ①금융사고 外 ②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③금융관련법규 중대 위반사항** 적발에 기여한 경우, ④위법·부당한 지시 및 내부통제 불비에 대한 선제적 제보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한 경우까지 지급 확대

* 예: 임직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50인 이상의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예: 금융관련법상 벌칙부와 대상이 되는 중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등)

□ **(포상금 산정기준 정비)** 포상금이 구체적 기준 없이 정성적으로 산정되어 예측 가능성이 낮았던 한계를 개선

- 사고액·피해액·위반액의 일정비율(예: 5%)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산정기준을 구체화

* 산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非금전 금융사고(금융실명법 위반, 금품요구(금액미확정) 등)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심의위원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포상금 산정

□ **(구조금 신설)** 제보로 인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 제보 관련 소송비용 등을 실비 내 지원하는 구조금 신설(「공익신고법」 준용)

□ **(지급 일원화)**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포상금·구조금 지급을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

※ 포상금·구조금 지급기준은 각 회사의 경영방침, 빈발 사고사례 등을 고려하여 자율 정비하고 개별한도 설정

5

[Total responsibility]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 위법행위 자진 신고시 징계를 적극 감면하고 준법제보 미이행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준법제보 제도를 통해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한 경우 관련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적극 적용*

* 단순 가담·추종자로서 지체없이 제보하여 조기적발 및 예방효과가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 고려(단, 위법·부당행위를 주도·계획하거나 장기·반복적 가담자 등 제외)

- (제보 미이행자 징계)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 제고

* 예: 금융사고, 다수 소비자피해 발생 초래 위법행위, 금융관련법규 중대 위반행위 등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저축·여전)에 한하여 우선 적용

6

[Yearly improvement]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

√ 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임직원 교육·홍보를 통해 업권 전반에 준법제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제도점검 및 개선) 각 중앙회·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제도 운영 및 제보처리 적정성 점검 후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
- (정기 교육·홍보) 전 임직원 등 대상 정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를 용기 있게 제보하는 준법제보 조직문화 정착 추진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1. 기대 효과

- 금번 제도 개편은 자발적·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제보 유인체계 확립 및 철저한 제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행위를 제보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각종 비위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견고한 감시망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준법제보 문화가 뿌리내려 업권 스스로의 자정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향후 계획

- 각 업권(금융회사)에서 관련 내규 개정 등이 완료되는 대로 개편된 준법제보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은 10월중, 여전업권은 11월중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저축은행) 10.1. 시행 (상호금융) 10.19. 시행 (여신전문) 11.1. 시행.
- 향후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시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 同 제도가 중소금융업권 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각 업권별 준법제보 접수 안내 채널

1. 저축은행업권

- ▶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 - 소비자포털 - 소비자정보 - 준법제보

2. 상호금융업권

- ▶ 신탁중앙회 홈페이지(www.cu.co.kr) - 금융소비자보호안내 - 준법제보
- ▶ 농협중앙회 홈페이지(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
- ▶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 고객지원 - 신고센터
-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nfcf.or.kr) - 고객지원 - e-클린센터

3. 여전업권

-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 소비자지원 - 신고 및 접수 - 준법제보

한국IFSS 금융감독원



**중소금융업권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새롭게 바뀝니다!**

6대 핵심원칙(S.A.F.E.T.Y.) 기반 제보 인센티브 및 제보자 보호 강화

01

**금감원과 중소기업권이
함께 만드는 NEW 준법제보 제도**

6대 핵심원칙
'S.A.F.E.T.Y.'

금감원과 중소기업권은 업권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기존 내부고발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저축은행 10.1. 시행	상호금융 10.19. 시행	여신전문 11.1. 시행
------------------	-------------------	------------------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중앙회 | 상호금융협회 | 여신전문금융협회
수협중앙회 | 전담수협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02

**준법제보 S.A.F.E.T.Y.
자세히 알아보기!**

Standardized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Anyone 누구나 제보하고 제보 대상도 확대	Fully Protected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장치 강화
Enlarged reward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Total responsibility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래노사 책임 확립	Yearly improvement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

03

**제보의 가치를 높이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구조금을 신설하는 등 제보 유인체계 강화

지급대상 확대 금융사고 가 다수 소외(피해) 피해 위험행위 제보 등 포함	산정기준 정비 사고여부(위험행위) 인정여부 등 구체적 기준 마련	구조금 신설 유해·잠재적 피해를, 소송비용 등을 실제 내 지원하는 구조금 신설
--	---	---

04

신분노출 걱정 없는 제보,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익명제보 도입,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등 제보자
신분노출 우려 차단과 7대 불이익조치 강화를 명문화



익명성 강화

익명 제보채널을
간접 도요, 변호사를
통한 대외 제보 채널



비밀유지 강화

제보접수 처리 전이후
전원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의무화



7대 불이익조치 금지

인사상 불이익,
차별행위 등 7대 유형에
불이익행위 금지

05

더 촘촘한 준법제도 체계 함께 만드는 투명한 금융환경!



기대효과 ① 제보 활성화

강력한 제보 유인책에 확립과 철저한 제보자
보호를 통한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하는 환경 조성



기대효과 ② 내부통제 강화

위법·무당행위의 조기 발견 및 선제적 차단을 통한
올바른 준법제도 문화 확산



기대효과 ③ 업권의 자정기능 제고

업권 스스로의 자정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06

준법제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지속은행업권

지속은행업권 www.fsb.or.kr > 소비자포털 > 소비자정보 > 준법제보

상호금융업권

신용협동조합 www.cu.co.kr > 금융소비자보호안내 > 준법제보

비영리민간단체 www.nonhyup.com > 윤리경영 > 불만신고센터

수협중앙회 www.suhup.co.kr > 고객지원 > 신고센터

농업협동조합 www.nufol.or.kr > 고객지원 > e-불만센터

예천업권

예천금융협회 www.crefa.or.kr > 소비자 지원 > 신고 및 접수 > 준법제보

안전한 금융 생활이
필요하다면
지금 금융감독원을
팔로우하세요!

